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연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68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9.

발의자 : 이연희 · 김정호 · 전용기
정준호 · 문진석 · 한민수
이강일 · 복기왕 · 박정
임호선 · 송재봉 · 허종식
한준호 · 안태준 · 문금주
서미화 · 김남희 · 이정문
박상혁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글로벌 첨단산업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의 거점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, 이를 위해서는 우수 기업과 창의적 인재가 모일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구조를 마련해야 함.

최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토지의 용도 와 밀도 등 기존의 규제를 과감히 탈피하여 창의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제도가 도입되었으나, 이를 산업단지에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한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.

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시혁신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산업

단지를 기업 맞춤형 고밀 복합 공간으로 재편하고 첨단산업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임(안 제23조).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시혁신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의3제2항 · 제3항 · 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 · 제2항을 준용한다. 다만, 같은 법 제40조의3제7항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혁신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도시혁신구역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단지를 새로 지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3조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등의 적용특례) ① ~ ④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23조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등의 적용특례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국토교통부장관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</u> <u>⑥ 제5항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의3제2항·제3항·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·제2항을 준용한다. 다만, 같은 법 제40조의3제7항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혁신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</u></p>
<u><신 설></u>	